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69>

JCCT 2022-11-70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설립주체와 교사고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Step-by-step Policy Directions and Tasks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Entity and Teacher Employment

김대욱*, 박창현**

Kim, Dae-Wook*, Park, Chang-Hyun**

요약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구체적인 모델(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보통합 논의 이후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이후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방향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된 이후의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국가책임 단계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아학교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요어 : 유아학교, 유보통합, 설립유형, 유치원, 어린이집

Abstr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has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promote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ore of integration is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ecific model, so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the discussion has focused on the "Young Children School", and there were differences of opinion on specific iss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specific model for the "Young Children School" after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were integra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 is to find out what the model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is study, assuming that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as realized, a plan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y type of establishment was proposed.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a model of a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is required. Second, a detailed school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establishment should be developed. Finally, 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reform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 after-school course operation model, and the integration plan with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sented during the young children school system.

Key words : Young Children School,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stablishment Type, Kindergarten, Child Care Center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subi0407@hanmail.ne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1. 서 론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미래 담론의 핵심은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 이슈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지난 30년간 논의되어온 매우 오래된 미래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유아학교로의 통합논의는 무상교육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에 실현 시키고자 노력하였다[1]. 그러나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견, 재정, 교사양성체계 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유보격차완화 정책으로 우회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책성과는 미비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다시 유보통합을 국정추진과제로 제안하면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정책사에서 나타난 실패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정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임기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이 현실화되었을 때 유아학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설립유형별 차이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설립유형별로 각자의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통합할 것인지,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설립유형별로 향후 유보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지에 집중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는 공교육, 공보육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한 다양한 기관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출발선부터 평등하고 질높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ECEC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유아교육기관으로의 완전취학율이 90%이상을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공공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립,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설립유형별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영유아의 경우, 기관 선택의 여부에 따라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연령의 유아가 선택하는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제공받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침해이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의 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설립유형별로 해법을 찾아봐야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다르다. 급여를 주는 주체도 아직까지 국가와 사인(私人)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완전한 형태의 공립유아교육기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역시 사인(私人)이나 사적인 조직인 위탁체가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운영은 개인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토지건물소유주체와 교사고용주체를 살펴보면 기관의 특성이 공적인 기관에 가까운지 사적인 기관에 더 가까운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유보통합 현실화 국면에서 국공립유아교육기관과 사립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유아교육계의 오랜 정책과제 중 하나는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며[2], 2022년 3월 한국교총과 교육부 단체교섭의 결과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기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3].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당선 후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공히 큰 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선언하였다[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유보통합은 11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2022년 9월 현재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5]. 이러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유보통합 실행 이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의 교육체제의 틀 안에서 유아학교로 운영될 것이다. 명칭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체제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유아학교이다.

몇 달동안 공백이었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16].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이미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3], 이는 유보통합 국면에서 유아학교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유보통합을 교육부 중심으로 실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표명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유보통합추진준비단을 발족하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아학교가 논의의 한 가운데에 있다. 각론에서 달라질 뿐이다. 이에, 설립유형별로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세부 명칭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모델(안)을 제안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에서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가 일어난 것은 과거 유보통합을 먼저 실천한 OECD 선진국들에서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31].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하고,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공립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을 통합시켜나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발표되었고[16], 유아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며,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반추해보면, 부처 일원화 이후에 공립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전개과정에 대해 통찰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십수년간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국정과제로 실천하려는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4-5]. 따라서, 유아학교 체제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산하로 0-5세 유아학교 체제가 정립되었을 때, 설립유형별 통합 방안과 모델 구축시 고려할 점들을 논의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토지건물 소유와 교사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육부 중심 0-5세 단계별 유아학교 모델(안)의 정책방향과 과제는 어떠한가?

II.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현황

1. 선진국들의 유보통합 현황

박은혜와 장민영은 Eurypedia와 Nauman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가 된 6개의 나라 모두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가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8개국 중 일원화가 된 곳은

표 1. 국가별 행정체계

Table 1. Administrative system by country

국가명	통합 여부	담당부처	연령	통합 연도
노르웨이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0~6세	2005
덴마크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6세	2011
스웨덴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6세	1996
핀란드	○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0~6세	2013
뉴질랜드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5세	1986
영국	○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0~4세	1998
일본	×	0~2세 보육-후생노동성	0~2세	2008 : 부분 일원화
		3~5세: 교육+보육- 문부과학성	3~5세	
		0~5세: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유보연계추진실)	0~5세	
프랑스	×	0~2세: 보육- 사회복지건강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Employment and Solidarity	0~2세	연령간 부처 분리: 완전 일원화
		3~5세: 교육- 교육부 Department of National Education, Youth and Community	3~5세	

출처: E.H. Park & M.Y. Jang[9]

6개국, 이원화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2개국이었다. 교육부로 일원화가 되면 공교육 학교 체제로 재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인 알 수 있다. OECD에서 2011년부터 유보통합이 생애 초기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0].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유보통합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선진국들의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진행 경과
 세계 각국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유럽은 OECD 국가들 중 선진적으로 유보통합을 교육부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실행하였다.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유보통합을 실현시킨 나라는 1996년에 통합을 실행한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유아학교 체제로 유보통합이 전개되었다[8]. 스웨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의 영역에 있는 사립 유아교육기관들이 다수 설립되어 있었으나, 유보통합 이후 급진적으로 국공영화하지 않고 국공립형과 사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당시 스웨덴의 유보통합은 OECD Start Strong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29]. 스웨덴에서의 유보통합은 평생학습체제에서 유아학교를 강화시켜 유아학교와 이후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였다.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는 2005년에 교육부 중심으로, 덴마크는 2011년에 교육부 중심으로 각각 유보통합이 실현되었다. 이는 교육행정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한 결과였다.

핀란드는 2013년 유보통합을 실현하였다. 그 이전에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에서 6세를 위한 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사회보건사업부에서 0~5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30]. 핀란드는 유보통합을 위해 공통교육과정을 만들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부처를 통합시켰다[31-32]. 공립보육시설과 유아학교를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이 1996년부터인데, 통합은 2013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유럽의 OECD 선진국들은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실천할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

보다 20여 년 빨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였다. 북유럽 OECD 선진국들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며 공립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32]. 이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1) 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은 5,116개, 사립유치원은 3,446개이다. 국공립유치원의 학급수는 167,485개이며 사립유치원은 385,327개이다. 전체 원아수는 53,696명이며, 공립유치원에 21,318명, 사립유치원에 32,353명이 재원 중이다. 교원의 수는 전체 33,173명이다.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비율은 39.7%로 거의 40%에 달하고 있다[11].

표 2. 2022년 유치원 설립별 개황

Table 2. Overview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s in 2022

설립유형	학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국립유치원	3	255	25	17
공립유치원	5,113	167,230	21,318	13,449
사립유치원	3,446	385,327	32,353	19,707
계	8,562	552,812	53,696	33,173

출처: 교육통계(<http://kess.kedi.re.kr>) 유치원 설립별 개황. 2022년 10월 10일 인출.[11]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은 교사채용형태가 국가고시로 교사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건물 설립을 국립대학이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이나, 사립학교 중 법인화 비율은 13.6%이며, 법인 중, 학교법인의 비율은 26.6%이다[14].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 학교법인은 3.6%로 초중등이 100%라는 점을 비교할 때 사인(私人) 운영 비율이 매우 높은 형태이다.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5,437개이며 가정어린이집이 13,891 과 민간어린이집이 10,603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합치면 전체의 73.6%를 차지한다. 전체 원아수는 1,184,716명이며, 교사 수는 321,116명이다.

어린이집 국공립 이용 아동비율은 22.7%로 민간의존 비율이 77%가 넘는다.

표 3. 2021년 어린이집 설립별 개황
 Table 3. Overview of child care center establishment in 2021

설립유형	원수	원아수	교사수
국공립어린이집	5,437	268,967	67,191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1,285	72,085	17,673
법인어린이집	640	30,998	7,351
민간어린이집	10,603	535,428	123,655
가정어린이집	13,891	208,842	83,758
직장어린이집	1,248	64,931	20,479
협동어린이집	142	3,465	1,009
계	33,246	1,184,716	321,116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보육통계. [13]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지만, 실제 운영은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온전히 공립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위탁받은 개인이나 위탁체가 다시 공고를 내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역시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은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역시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운영은 원래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개인 원장이 이어받아 하는 형태이다. 사인(私人)이 운영하면서 공공성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이 운영하는 형태로 공공성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질적 특성을 보인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립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경비의 절반을 내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지혜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높은 편이다[14]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하며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운영은 대부분 위탁업체를 공모하여 수행하고 있다. 운영경비는 사업장에서 내는 비용, 국가에서 내는 비용, 부모들이 내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앞서 살펴본 설립유형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과 달리 영아전담으로 운영할 수 없다.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시 만 0~2세 영아, 만 3~5세 유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해야 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 현실화 이후에도 설립유형이 다른 어린이집들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연령별 이원화 고찰의 필요성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가 관할하며 시작되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0-5세 취업모 자녀의 보호기능으로 출발하였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 보육시설은 6,088개소에서 1997년 15,016개소로 약 2.5배 증가하며 점차 확장되어왔다[15].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유아를 중복관리하게 되면서 부처간,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고착되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를 한 번에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부를 실행부서로 하는 단계적 유보통합안을 제안하였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계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열린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단계적 유보통합이 포함되었고, 현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유아학교 체제가 될 때,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구상해보고 방향을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 0~5세’ (영)유아학교 모델을 가정하고, 토지건물 소유와 교사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하며, ‘만 0~2세’ 영아학교(학급) + ‘만 3~5세’ 유아학교(학급) 모델의 장단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주체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국공립 성격과 사립 성격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주체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야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본다.

먼저, 유치원은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립유치원은 3개소로 모두 국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지건물은 국가소유이며 교사고용주체 또한 국가이다. 공립유치원의 토지건물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산이며, 교사고용주체는 국가이다.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21-22]. 이에 이 2개 유아교육기관은 현재 유이하게 국공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시작은 사립유치원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공교육의 확립이 어려울 때 사립유치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유아교육이 보급되었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였고 지금도 사립유치원의 토지건물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난다. 사립유치원의 교사고용주체는 원장 개인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보다 훨씬 설립유형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토지건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다. 그러면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개인

위탁자에게 맡겨 수행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양적으로 확대하고자 자치구 차원의 확충방안, 그리고 공공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 수를 늘려갔다[24]. 양적 확대가 먼저였던 것이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주체는 개인임을 명확히하고 개인에게 적절한 위탁운영권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5].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설비는 지자체 소유이지만, 교사고용은 개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고용주체는 위탁자인 원장 개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과제로 수탁기관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경쟁유치 과정을 폭넓게 개방하는 등 위탁운영에서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것을 알 수 있다[24]. 한편, 토지건물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여서 설립유형이 개인인 어린이집들에 비해 지원을 더 받지만 개인이 위탁운영한다는 점에서 완전 국공립 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로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임용시험을 도입하여 이를 통과한 교사들에게 국가직 교원 자격을 부여해야 국공립 시설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짚어내면, 토지건물만 공적인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점이고, 운영은 개인이 한다는 점에서 사립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채용 및 관리는 부모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만든 공동체에서 진행한다[26]. 다른 설립유형들에 비해 부모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법인어린이집과 법인등어린이집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법인(등)어린이집의 법인의 재산은 개인 출연 혹은 사회복지법인 출연 재산으로, 민간의 범주에 있어,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23].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의 주체도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다. 초중등학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립으로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사립 유아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모두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므로, 역시 토지건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교사고용도 원장 개인이 하고 있다. 사립의 형태이다.

직장어린이집은 가장 복잡한 형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이행 강화를 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28]. 토지와 건물은 직장 소유이며 설립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경우도 많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직장의 소유인데, 한번 설치되면 직장이 폐쇄될 때까지 직장에서 사실상 방치하기는 어려워 계속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육아와 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라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운영비의 절반을 회사 경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완전 공공화시키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사내 복지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27]. 직장어린이집은 이 형태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장에서 설립하면 토지건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민간 기업에서 설치하면 토지건물이 민간의 소유가 된다. 민간의 토지건물을 강제로 국유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문 위탁업체에 운영을 의뢰하고 모든 보육교직원의 고용이 간접 고용 형태이다. 직장에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보다 별도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현실화 이후 영유아학교나 유아학교의 구분을 간소화하여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설립유형이 다양해 이를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은 국공립 구분이 명확하지만, 어린이집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향후, 토지와 건물 소유가 공영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은 향후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교사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완전한 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교사고용주체가 원장 개인이며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사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 국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V. 설립유형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

유보통합 모델(안)을 제안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재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유아공교육 정책은 발전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가 지속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여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아공교육 정책 중에서 재정과 관련이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17],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집행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게끔 한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선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1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는 유아학교 모델(안)을 구축한 이후에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매우 다르며 다양하다[11,13]. 이러한 설립유형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한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19]. 또한, 설립유형에 따라 운영 및 교사 처우 실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재정 운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20].

설립유형별로 가장 큰 차이는 교사채용여부를 직접 채용하는지 간접채용하는지에 대한 차이이다. 국가에서 직접 교사를 채용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은 국공립유치원이 유일하다[21].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22 김경철 박혜정 2014].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외의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통합을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교사고용주체는 국가라 볼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고용주체를 개인이나 위탁자,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19-20].

이처럼 어린이집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19,23,26-27] 모두에서 교사의 고용주체가 민간인 사인(私人)으로 되어 있어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공공성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 또 하나의 차이는 토지건물소유의 주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법인과 법인(등)어린이집은 설립주체가 민간이며 재산운영은 법인의 출연재산이다

[23]. 국공립어린이집은 토지와 건물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어 높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되고 있다[24].

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동체 조합을 결성하여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6]. 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주도하여 토지 건물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이 개인소유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가 직장으로 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사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7-28]. 직장어린이집은 재정면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정책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적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등 타 어린이집과 다른 특성이 있다[38].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은 별도의 기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유아 공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주체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며 단계적 통합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밝힌다 있다[5].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보통합을 급속도로 추진할 경우 큰 부담이 되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데 있어 재정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17],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구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립유형별로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안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체제가 교육부로 부처가 일원화되어 0-5세 유보통합이 진행되었을 때의 안이다.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한다. 교육부 산하 0-5세 유아학교 하에 0~2세 영아가 다니는 영아학교(영아학급)과 3-5세 유아학교(학급)이 유아학교로 통칭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한다[3].

유치원의 경우, 국립유치원은 국립유아학교,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아학교가 된다. 즉,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유아학교가 된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아학교가 된다.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통합되어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

될 때,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사립유아학교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유아학교의 속성을 가지나 공공성이 높으므로 공영형 사립유아학교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유아학교가 된다.

어린이집은 0-5세 영아와 유아가 모두 다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20,25]. 한번에 유아학교체제로 편입시키기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유아학급을 둔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설립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학교 체제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4. 설립유형별 영유아교육기관의 토지건물소유, 교사고용주체[19,21,23,24,28]

Table 4. Land and building ownership and teacher recrui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y type of establishment

구분	설립유형	토지건물 소유	교사고용 주체	향후 공/사립
유치원 → 유아학교	국립유치원 →국립유아학교	국가	국가	국립
	공립유치원 →공립유아학교	지역 교육청	국가	공립
	사립유치원 →사립유아학교	개인	개인	사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위탁자	사립
	법인어린이집	개인설립 법인	개인설립 법인	사립
	법인등어린이집	법인	법인	사립
	협동어린이집	법인	법인	사립
	민간어린이집	개인	개인	사립
	가정어린이집	개인	개인	사립
	직장어린이집	직장	위탁 업체	사립, 직장

V. 유아학교의 단계적 정책 방향과 과제

일제의 잔재라는 문제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명칭이 변경되고, 유-초-중-고 학제를 완성시키고, 교육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필요성 등 앞으로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3]. 이미 교육부에서 유치원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2].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하는

것을 유아학교 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앞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OECD 선진국의 유아학교 중심 유보통합 과정이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실시된 것을 감안하여[8,30] 본 연구에서 OECD 선진국들의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국들의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성한다면, 만 3-5세 대상 유아가 중복관리되지 않아 부처간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행정 체계가 일치하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2]. 또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양질의 교원 시스템 마련, 저출생 시대 영유아 체제적 지원, 무상/의무교육의 토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아와 유아, 초등과의 연령별 연계를 돕고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한 0-2세 보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으며 국가책임교육을 출발선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때, 방과후과정을 개념과 속성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중등과는 다른 유아학교의 방과후제도는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도 개념과 속성의 측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두 번째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는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립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고, 기존과는 다른 운영체계를 가진다[24-25]. 따라서, 별도의 관리체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체계에 속해있어 교육부의 설립유형상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이다[28]. 직장, 기업 유치원(유아학교) 관련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유아학교 체제에서의 연령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연령이 0-5세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영아학급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유아학교의 범주를 넓게 잡아 0-2세

영아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유아학교의 범주에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 방안, 지원 기관 모델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통합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향후 역할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단계적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재원 마련 계획과 유보통합의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 연구들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0-5세 유아학교의 단계적 정책 방향과 과제[2,3,24,25,28]
 Table 5. Step-by-step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0-5 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구분	정책 방향	과제
1단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	일제간재정산, 교육 행정체계 일원화
2단계	설립유형별 유아학교 모델(안) 마련	설립유형별 특성 이해, 공공성 강화
3단계	0-5세 유아학교 체제 구체화	영아학급, 유아학급 고려
4단계	시도 교육청의 역할 강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5단계	단계적 유보통합 로드맵 확정	재원마련,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VI.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로의 부처 일원화 이후 0-5세 유아학교의 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다. 설립유형에 따른 유아학교 모델의 특성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은 국가책임 교육을 강화하며, 0-2세의 보육에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미래형 모델이다. 영아와 유아교육을 명확하게 나누고, 영유아와 초등의 연계를 유연하게 돕는 연계형, 전환형 미래 모델이며 교육복지 통합 모델이다.

후후 0-5세 유아학교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비전(철학과 문화)과 교수학습방법, 평가, 돌봄, 공간과 환경 등이 미래적 요소인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등과 융합

되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안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소수의 미래세대 영유아들을 알차게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시 토지건물 소유, 교사고용의 관점에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유아학교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21-22], 어린이집은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토지와 건물이 국가, 지자체 혹은 직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24,28],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 구축시 고려할 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과정 모델 제안, 교육청-지자체/지원조직의 통합 등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교육부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미지원시설도 있어, 기관의 격차가 재정, 환경 측면에서 더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보가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한다면 보다 나은 유보체제를 개편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I. 결 론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책무성을 갖고 지난 수십년간 공회전되어온 유보통합을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통해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산하, 국가책임 0-5세 유아학교 모델이 요구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어느 한쪽의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때문이기도 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부 중심의 연령 이원화된 유아학교 체제는 다른 방향보다 더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안이다.

둘째, 다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아학교 모델이 개발되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여 부드럽게 통합하면서도 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형태이니만큼 사립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은 위탁체가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유아학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계적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함께,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함께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통합형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연령별로 이음새 없이 보육과 교육체제와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References

- [1] J.W. Lee, *A Critical Review on the current policy of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5, No. 6, pp. 221-240, 2015.
- [2] H.I. Hwang, H.A. Suh, Y.R. Hwangbo, M.H. Choi, Y.S. Song, & H.J. Choi, *The Need Analysi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 for Preschool Syste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6, No. 3, pp. 135-156, 2001.
- [3] *Negotiation betwee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of Teacher's Association is concluded, "Consideration of change to Kindergarten → Young Children School"*, Newsis, March 8, 20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7_0001785188&cID=10201&pID=10200
- [4] *Who will do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which has not been done in 30 years? Jae-Myung Lee? Seok-Yeol Yoon?* Babynews, March 4, 2022,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26>
- [5] *"Establish a promotion team as early as this week", will the Ministry of Education-centered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be integrated faster?*, EBS news, September 7, 2022,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53595/N>
- [6] E.K. Cho, *Public Preschoo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State Pre-K Program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9, No. 3, 59-88, 2020.

- [7] N.H. Kim,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and Evaluation of Universal Pre-Kindergarten Programs in U.S.: Examining Georgia's Lottery-Funded Pre-K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2, No. 1, pp. 319-338, 2008.
- [8] C.H. Park, S.Y. Park, Y.J. Kim, and K.O. Yoon, *Policy Implication on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ased on the Politics of the Swedish Pre-school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4, No. 4, pp. 69-90, 2010.
- [9] E.H. Park, & M.Y. Jang, *A Comparative Study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8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5, No. 1, pp. 149-180, 2014.
- [10] J.P. Martin,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Stockholm).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2535215.pdf>
- [11] KESS Educational Statistical Service, *2022 Overview of Establish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atistics*, <https://kess.vedi.re.kr/index>, withdrawn on October 10, 2022.
- [12] J.W. Kim. *Difficulties faced by novice directors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the support measur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2, pp. 101-144, 2022.
- [1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1 Child care Statistics*, Sejong, 2022.
- [14] C.H. Park, K.J. Kim, & J.Y. Yoon, *Issues and tasks for compulsor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and childcare*,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2021.
- [15] H.J. Lee, & S.Y. Auh, *The Influences from the Satisfaction in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Stress of Worki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4, pp. 329-351, 2018.
- [16] *As soon as Minister Joo-ho Lee took office, he promised "systematic promo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aby news, November 7, 2022,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51>
- [17] K.C. Song, Key issues and tasks of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43-59, 2011.
- [18] G.J. Kim, M.K. Moon, & H.J. Cho, *Parenting Policy Financial Procurement Governance* (Research Report 2018-10), Seoul: KICCE, 2018.
- [19] H.J. Yoo,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by their Types of Establishment,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0, No. 13, pp. 287-314, 1998.
- [20] H.J. Yoo, Y.S. Lee, & M.J. Kang, An Analysis of management and teachers' treatment by type of child care center establishment: An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on Child-care in Busa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2, No. 4, pp. 181-202, 2012.
- [21] N.Y. Kim, M.J. Kim, G.Y. Moon, & Y.J. Shin,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s and their Requests for Improvement in the Public Kindergarten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Proc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4, pp. 1-24, 2020.
- [22] K.C. Kim, & H.J. Park, Living and Meaning of the Test as Applicants who were Preparing for the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Screening Appoin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5, pp. 427-452, 2014.
- [23] J.W. Kim, Critical Review on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461-489, 2015. DOI : 10.22944/kswa.2015.17.3.017
- [24] J.S. Choi, & S.H. Sung, A Study on Strategic Plan of Entrustment Business for Public Childcare Center by Social Cooperative,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Vol. 33, No. 2, pp. 55-77, 2015.
- [25] B.S. Kim, & B.Y. Kim, Effect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or Successful Contracting-out: Focused on National Childcare Cent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4, pp. 1-20, 2014.
- [26] M.H.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philosophy and architectural space of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nurseries, *Educational Facilities*, Vol. 19, No. 2, pp. 41-50, 2012.
- [27] Y.J. Byun, & D.K. Lee, Troubles and the wishes of teachers at a workplace nurser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5, No. 2, pp. 165-187, 2015.
- [28] J.W. Gong, A study on product analysis of policies to suppor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 day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36, No. 1, pp. 121–146, 2019.
DOI : 10.33471/ILA.36.1.6
- [29]OECD,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2006.
- [30]N.U. Kwak, A study on the integration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Finland,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8, No. 1, pp. 329–341, 2017. DOI : 10.20972/kjee.28.1.201703.329
- [31]Y.J. Lee, Finnish Parenting Polic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5, pp. 39–46, 2009.
- [32]K.H. Lee, & J.S. Kim, The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Norway, Finland, and Denmark,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1, 458–481, 2013.